#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 6289

제출연월일: 2022. 3.

제 출 자: 대구광역시장

### 1. 제안이유

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건립된 노사평화의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주요사업,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8조)
- 라. 대관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제16조)
  - 사용허가, 사용료, 사용료 감면 및 반환 등
- 마. 관람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 ~ 제19조)
  - 관람료, 관람의 제한, 해설사 운용
- 바. 노사상생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 ~ 제21조)
- 사. 소장품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22조 ~ 제27조)
  - 소장품 구입, 보관 및 관리, 소장품 기증 등
- 아. 사용·수익 허가,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(안 제28조 ~ 제29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본예산 9.2억원 반영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#### 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
  - 가) 예고기간 : 2022. 2. 28. ~ 3. 21.(21일간)
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성별영향평가: 자체개선안 1건(반영)
  - 가)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, 성별 균형 참여적 관점에 의해 성별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자체 반영
- 4) 부패영향평가: 개선의견 1건(반영)
  - 가) 제13조제4호와 관련, 사용료 감면에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재량권의 남용 소지가 있어 구체적 기준 마련 권고
    - ⇒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대관운영계획 수립시 관련 규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반영할 예정
- 5) 갑질영향심사: 개선의견 3건(반영)
  - 가) 제13조제4호와 관련, 자의적 권한 행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객관적 기준 마련 검토
    - ⇒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대관운영계획 수립시 관련 규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반영할 예정
  - 나) 제26조제2항과 관련, 기증사례금 결정 절차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어 자의적 권한 행사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
    - ⇒ 제26조제2항에 "이 경우 기증품의 평가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 의결한다."라는 문장을 추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기증사례금을 심의·의결토록 함
  - 다) [별표] 전당 시설 사용료 비고 2번과 관련, 사용허가 신청서의 사용기간에 "행사준비 등의 기간"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서식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
    - ⇒ 규칙안의 사용허가 신청서의 사용기간을 준비기간과 행사기간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
- 6) 비용추계서 :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#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안

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사상생 협력모델의 거점 및 교육연구시설로 건립 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위치)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(이하 "전당"이라 한다)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52길 6에 둔다.
- 제3조(주요사업)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  - 1. 노사상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 - 2. 노동·산업역사관, 체험관 등 상설전시관 관리 및 운영
  - 3. 노동·산업문화 우수작품 등 기획전시 및 유치
  - 4. 노동·산업역사 자료 수집 및 콘텐츠 개발
  - 5. 노사단체, 기업, 학교 등에 교육 및 회의 장소 제공
  - 6. 그 밖에 올바른 노사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제4조(개관 및 휴관) 전당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. 다만, 전당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.
  - 1. 1월 1일, 설날, 추석날
  - 2. 매주 월요일. 다만, 월요일이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
  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

#### 제2장 운영위원회

- 제5조(운영위원회 설치) 전당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·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1. 전당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  - 2. 전당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- 3. 각종 노사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
  - 4.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
  - 5. 소장품 구입, 기증 및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
  - 6. 그 밖에 전당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6조(운영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  -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  -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 - 1. 노동·산업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2. 박물관, 역사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3. 노사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
  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.
- 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8조(운영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.

-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.
- ⑥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.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제3장 대관 등

- 제9조(사용허가) ① 전당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(이하 "신청인" 이라 한다)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-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전당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시대관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  - ④ 시장은 사용허가를 할 때 시설의 원활한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- 제10조(사용허가 범위)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당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기본시설: 다목적홀, 교육훈련실, 세미나실
  - 2. 부속설비: 냉난방 설비, 빔프로젝터 등
- 제11조(허가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  - 1. 공공 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- 2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. 그 밖에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12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 전당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.
  - 1. 오전: 9:00부터 12:00까지
  - 2. 오후: 13:00부터 17:00까지
  - 3. 야간: 18:00부터 22:00까지
  -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으며,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.
- 제13조(사용료 감면)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  - 1.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: 면제
  - 2.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조직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: 면제
  - 3. 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 주최하거나 주관 하는 행사: 면제
  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: 100분의 50 경감
- **제14조(사용료 반환)** ①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  - 1. 과오납(過誤納)한 경우
  - 2.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  - 3.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전당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
  - 4.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
  -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: 사용료 전액 환급
  - 2.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: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급

- 제15조(사용자의 설비)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면 미리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사용자 준수사항)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.
  - ②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### 제4장 관람

- 제17조(관람시간 및 관람료) ① 노동·산업역사관, 체험관 및 기획전시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  -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 - ③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
- 제18조(관람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  - 1. 감염병 환자
  - 2. 음주 등으로 전시품,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
  - 3. 타인에게 위해(危害)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
  - 4. 그 밖에 시장이 전당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제19조(해설사 운용) ① 시장은 노동·산업역사관,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 활동을 수행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5장 노사상생 프로그램 운영

- 제20조(프로그램 추진) ① 시장은 노사상생과 노동·산업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노사상생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련 기관·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소요되는 비용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21조(프로그램의 내용) 노사상생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노사상생 연구에 관한 사업
  - 2. 노사상생 체험에 관한 사업
  - 3. 노사상생 교육에 관한 사업
  - 4. 노사상생 확산에 관한 사업
  - 5. 그 밖의 노동 관련 기관 교류사업 등

### 제6장 소장품 구입 및 관리

- 제22조(소장품 구입) 시장은 전당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료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소장품 관리책임자 지정 등) ① 시장은 전당의 소장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소장품관리관은 소장품의 관리·수리·복원·복제·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.
  - ③ 소장품출납원은 소장품관리관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.
- 제24조(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) ① 시장은 전당의 소장품이 분실,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- 제25조(소장품의 열람 등) ① 시장은 전당의 소장품에 대한 열람 또는 대여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소장품은 작품·도록(圖錄)·CD·필름 등을 포함한다.
- 제26조(소장품 기증) 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사료 등의 기증신 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.
  -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발급하고,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 작품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증품의 평가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.
- 제27조(소장품의 불용결정) ① 시장은 소장품 중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은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.

### 제7장 보칙

- 제28조(사용·수익 허가) ① 시장은 전당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사용·수익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29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의 권한을 전당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위임한다.
  - 1. 제4조에 따른 휴관일 조정
  - 2.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
  - 3.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
  - 4.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람시간 등에 관한 사항
  - 5.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사상생 프로그램 추진 등에 관한 사항
  - 6.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장품 구입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
  - 7. 제28조에 따른 사용·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
- 제3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[별표]

# 전당 시설 사용료(제12조제2항 관련)

### 1. 기본시설 사용료

(단위: 원)

| 시 설 명   | 층수 | 면적<br>(m²) | 사 용 료<br>1회 | - 비 코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다 목 적 홀 | 2층 | 686.7      | 200,000     | 1) 기준시간 미만 사용은 기준시간 사용으로 간주      |
| 교육훈련실1  |    | 183.6      | 60,000      | 한다.<br>2)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           |
| 교육훈련실2  | 3층 | 99.19      | 40,000      |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<br>사용료의 20%로 한다.   |
| 교육훈련실3  |    | 103.68     | 40,000      | 3) 1시간 초과할 때마다<br>사용료의 20%를 가산징수 |
| 세 미 나 실 |    | 103.68     | 40,000      | 한다.(다만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)      |

# 2. 부속설비 사용료

(단위: 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기 준 | 사용료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|
|                   | 빔프로젝터 |              | 1회  | 15,000 |    |
| 다목적홀              | 냉방    | 6~8월         | 1회  | 50,000 |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3~5월, 9~10월  | 1회  | 30,000 |    |
|                   | 난방    | 1~2월, 11~12월 | 1회  | 50,000 |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3~5월, 9~10월  | 1회  | 30,000 |    |
| 교육훈련실1            | 빔프로젝터 |              | 1회  | 10,000 |    |
|                   | 냉방    | 6~8월         | 1회  | 6,000  |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3~5월, 9~10월  | 1회  | 4,000  |    |
|                   | 난방    | 1~2월, 11~12월 | 1회  | 7,000  |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3~5월, 9~10월  | 1회  | 5,000  |    |
|                   | 빔프로젝터 |              | 1회  | 10,000 |    |
| 교육훈련실2~3,<br>세미나실 | 냉방    | 6~8월         | 1회  | 3,000  |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3~5월, 9~10월  | 1회  | 2,000  |    |
|                   | 난방    | 1~2월, 11~12월 | 1회  | 4,000  |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3~5월, 9~10월  | 1회  | 2,000  |    |

- ※ 주: 1. 오전, 오후, 야간을 각 1회로 한다.
  - 오전(09:00~12:00), 오후(13:00~17:00), 야간(18:00~22:00)
  - 2.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.

# 관계 법 령

# □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

- 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 단체(이하 "지역 노사민정"이라 한다)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,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.
  -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□ 근로복지기본법

제4조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 · 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·기금·세제·금융 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1.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

○ 위 치: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52길 6

○ 규 모: (연면적) 5,169m², (층수) 지하1층, 지상3층

○ 주요시설 : 노동·산업역사관, 교육·모의체험관, 다목적실, 교육훈련실 등

- 주요사업
  - 노사상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 - 노동·산업역사관, 체험관 등 상설전시관 관리 및 운영
  - 노동·산업문화 우수작품 등 기획전시 및 유치
  - 노동·산업역사 자료 수집 및 콘텐츠 개발
  - 노사단체, 기업, 학교 등 교육 장소 제공
  - 그 밖에 올바른 노사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### 2. 비용 발생 요인

○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

### 3. 관련조문

○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

# 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
  - 노사평화의 전당 유지 관리 및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
- 나. 추계 결과
  - 2022년~2026년(5년) 전체사업비 4,599,983천원 소요 예상
- 다. 재원조달방안
-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

# 5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 : 일자리투자국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권오상

붙 임

# <연도별 비용 추계표>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| 1차년도<br>(2022년) | 2차년도<br>(2023년) | 3차년도<br>(2024년) | 4차년도<br>(2025년) | 5차년도<br>(2026년) | 계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세 입                 | 917,846         | 906,742         | 915,817         | 925,067         | 934,511         | 4,599,983 |
| 임 대 료               | 20,000          | 40,000          | 40,000          | 40,000          | 40,000          | 180,000   |
| 사 용 료               | 2,000           | 4,000           | 6,000           | 8,000           | 10,000          | 30,000    |
| 시비                  | 895,846         | 862,742         | 869,817         | 877,067         | 884,511         | 4,389,983 |
| 세 출                 | 917,846         | 906,742         | 915,817         | 925,067         | 934,511         | 4,599,983 |
| 인 건 비               | 109,071         | 111,252         | 113,477         | 115,747         | 118,061         | 567,608   |
| 운 영 비               | 335,775         | 342,490         | 349,340         | 356,320         | 363,450         | 1,747,375 |
| 사 업 비               | 400,000         | 400,000         | 400,000         | 400,000         | 400,000         | 2,000,000 |
| 시설관리비               | 23,000          | 23,000          | 23,000          | 23,000          | 23,000          | 115,000   |
| 자산취득비               | 50,000          | 30,000          | 30,000          | 30,000          | 30,000          | 170,000   |
| 재원 조달               | 895,846         | 862,742         | 869,817         | 877,067         | 884,511         | 4,389,983 |
| 자체<br>수입 <b>지방세</b> | 895,846         | 862,742         | 869,817         | 877,067         | 884,511         | 4,389,983 |